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11] <신설 2026. 6. 30.>

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803		바나나[플랜틴(plantain)을 포함하며,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]			
0803	90	기타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5	129,000톤
0804		대추야자 · 무화과 · 파인애플 · 아보카도(avocado) · 구아바(guava) · 망고(mango) · 망고스틴(mangosteen)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4	30	파인애플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5	33,500톤
0804	50	구아바(guava) · 망고(mango) · 망고스틴(mangosteen)	망고(mango)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5	18,500톤